

# 유엔 인권활동 보고회

-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중심으로 -

- 일시 : 2005년 9월 27일, 오후 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아연 인권활동보고회 - 아연 인권사업의 영향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부

# 유엔 인권활동 보고회

**사 회** : 나영희(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장)

**인 사 말** : 곽노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 발표 1 : 유엔 인권소위원회 .....1  
• 정진성(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
- 발표 2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보장하는 여성인권 .....13  
• 신혜수(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 토론 1 : 국제인권기구 활동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외통부 등에 대한 제안 ...29  
• 이대훈(인권소위원회 정진성 위원 자문위원)
- 토론 2 : 제57차 유엔인권소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31  
• 오병훈(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토론 3 : 국제인권 보호 체제와 우리의 인권 외교 .....34  
• 임훈민(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참고문헌

- 제57차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안과 결정사항 .....49



# **유엔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정진성 | 인권소위원회 위원

I. UN 인권기구의 형성 .....	3
II. 인권소위원회의 위상과 구조 .....	6
III. 인권소위원회의 효과와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9
IV. 제57차 인권소위원회 보고 .....	10

# I. UN 인권기구의 형성

## 1. 배경 : 인권규범의 보편성과 국제화

- UN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기구가 설립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세계적 규범 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곧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과 인권보호의 기제는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 인권의 개념은 지난 2세기 동안 노동자, 여성, 인종 등의 차별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통해 인권을 향유할 주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적 인권규범의 내용과 가치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즉 자유에 대한 관념과 국가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기반을 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 시작된 인권관념은 사회적, 경제적 재화와 용역 및 기회에의 평등을 보장하며, 국가가 그 축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제 형제애와 국제적 협력에 기초한 인권개념에 까지 이르렀다
-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등장한 것은 사회적 진보의 결과였다. 19세기 반노예제를 위한 몇몇 움직임<sup>1)</sup>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내문제로만 인식되었던 인권은, 1차대전 후 ILO가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국제연맹은 전쟁 후 국경이 달라진 지역의 소수민족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보다 본격적으로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나치에 의해 범해진 대학살이었다. 2차대전 이전에 또 대전 중에 나타난 많은 제안들은 UN의 결성과 세계인권선언으로 결실 맺었다.
- UN의 두 가지 큰 목적은 “국제평화유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이며,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 냉전기에 인권침해문제는 강대국간의 대결의 한 장이 되었으나, 세계인권선언은 구속력이 없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195,60년대를 통해 식민지 국가들의 잇단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UN회원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1966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선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약형식의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이 제정되었다. 그 후 변화는 가속되어 1967년 UN인

1)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노예무역을 그만두자는 결의를 했고, 1890년에 브뤼셀 회의에서 노예무역금지조약이 만들어졌다.

권위원회가 특정 국가 내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 1968년에는 이스라엘 점령지구의 인권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여러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긴 했으나 매우 큰 상징적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서 UN을 중심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정당화했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84년 고문 등에 관한 조약, 1986년 총회의 발전권 선언의 채택,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1998년 7월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전범재판소(ICC)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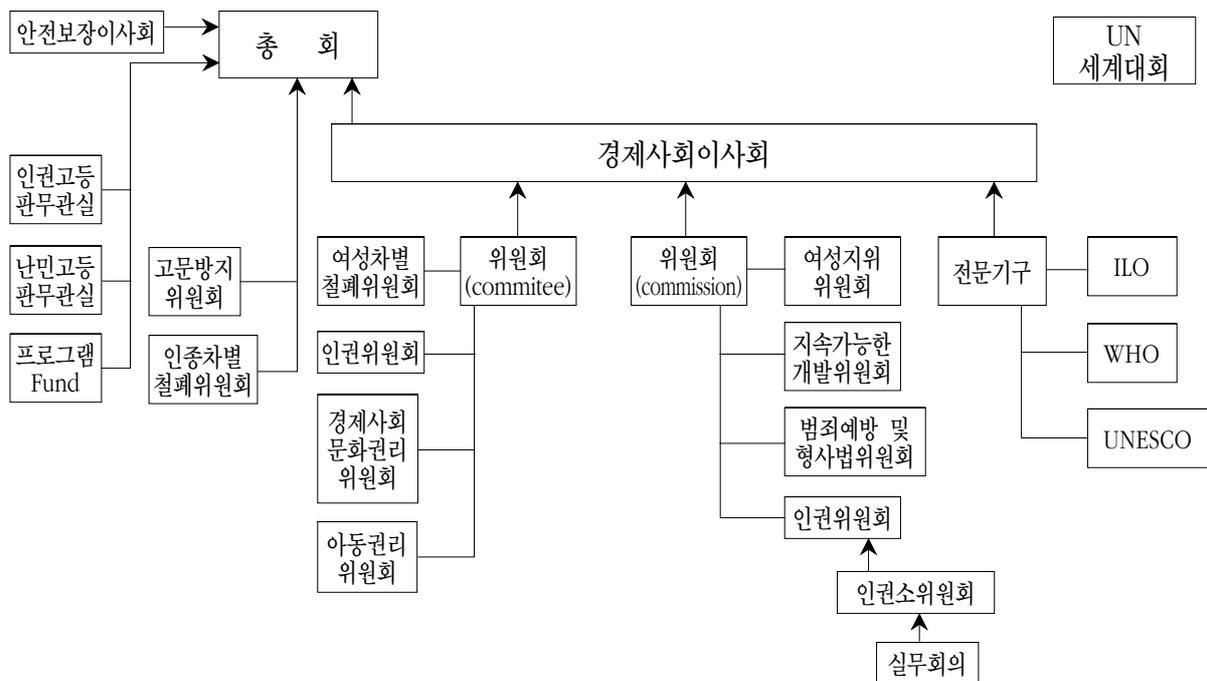
- 한편 국가간 외교에 인권문제가 개입되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 원조정책은 그 대표적 예다.
-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NGO의 활동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현상이다. 1970년대부터 UN의 인권활동에 NGO는 정기적이고 활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참가자가 되고 있으며, 그 수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국가, 국제기구와 함께 NGO는 인권의 국제적 논의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나라마다 형태가 다르지만 정부와 시민사회를 잇는 교량이 되면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2. UN의 인권관련기구

- 세계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규범(norm)이 구체적인 정치적 실체(political reality)로 이행되는데 UN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실제로, 인권에 관한 세계정부(human rights regime)가 실체를 갖추어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UN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UN의 인권관련 기관은 대체로 다음의 몇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내에 설치된 위원회(Commission)로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여성지위위원회 및 범죄예방 및 형사법위원회 등이 있다. 인권소위원회는 바로 이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몇 개의 실무회의(Working Group)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뒤에 논의할 위원회(Committee)들이 조약 비준국들에 대해 조약의 이행 감시를 주요 임무로 하고, 전문기구들이 노동, 건강 등 특정 이슈에 논의를 국한하는 것에 비해,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는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인권문제를 다루며 세계인권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총회나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의 실질적 논의에 기초하는 것이다.

- 다음은 인권 관련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Committee)로서, 7개의 주요 인권관련조약과 관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금지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등이 있어서,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NGO들도 counter-report를 제출해서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 특정 사항에 집중하는 ILO, 세계보건기구(WHO),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 및 총회 산하의 기금 또는 프로그램인 UN 아동기금(UNICEF) 등, 그리고 UN 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등이 있다.
- 그밖에 UN 세계대회(World Conference)를 통해 집중적으로 특정 인권문제를 토의하는데,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5년마다 열리는 세계여성대회,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반인종주의세계회의 등이 그것이다.
- 총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취한다.
- UN 내의 인권기관들을 총괄, 조정할 임무를 부여받고 1994년에 설립된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있다.



UN의 인권관련 기구

## II. 인권소위원회의 위상과 구조

### 1. 인권소위원회의 설립과 변화

- 인권위원회는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어 1947년 첫 번째 회기를 가졌다.
- 53개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인권위원회<sup>2)</sup>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 여러 인권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권고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3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여성의 권리를 위한 소위원회, 정보와 신문(Press)의 자유를 위한 소위원회 및 소수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가 그것이다. 그중 여성의 권리를 위한 소위는 여성지위원회로 발전되어 나갔고, 정보와 신문의 자유를 위한 소위는 1952년에 폐지되었다.
- 따라서 애초에 글자 그대로 소수집단의 권리에 집중했던 인권소위는 인권위원회 산하의 단 하나의 소위원회로 남아 인권문제 전반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 연구와 분석에 기초한 제안을 하는 포괄적 인권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99년에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소위의 이름을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로 바꾼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인 것이다.
- 인권위원회 밑에 단 하나의 인권소위가 존재하는 점 때문에 종종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의 중첩을 결과하기도 한다. 2000년부터 이루어진 인권소위의 기능 축소는 뒤에 논의할 인권소위 위원의 독립성으로 인한 인권위원회와의 갈등의 잠재성에 크게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미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2000년 인권위원회는 그전까지 4주간 진행되었던 인권소위원회의 기간을 3주로 단축하고, 그때까지 인권소위의 논의 영역이었던 국가별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논의(1503 procedure)<sup>3)</sup>를 인권위원회로 이관시켰다.<sup>4)</sup>

2) 지역별로 아프리카 15, 아시아 12, 중남미 11, 서방 10 및 동구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위원국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4년.

3) ECOSOC resolution 1503에 근거하여 시작된 procedure로서 개별 국가의 인권침해 사항이 confidentially 다루어진다.

4) <http://www.unhchr.ch/html/menu2/8/1503.htm>

- 2000년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4주에서 3주로 축소된 기간에 맞추어 의제 (agenda)들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하여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1503 절차가 없어진데 따른 소위의 대응에 대하여 긴 시간 숙의했다. 그간 큰 변화 없이 이루어져 왔던 의제 구성은 의제들의 병합과 생략으로 대폭 변경되었으며, 1503절차에서와 같이 개별 국가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 논의는 그 대로 하면서 그 논의를 보고서에 기록할 것을 결정했다. 1503절차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정부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러한 방향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NGO들마저 인권위원회 쪽으로 발길을 돌려버린 인권소위는 그 위상이 위축된 것을 실감하게 한다.
- 현재 UN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인권기구의 개혁에서 인권위원회가 상설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세한데, 그러한 논의 어느 곳에도 소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거론이 없다는 것은 정부 대표들이 독립 전문가 기구인 인권소위를 달갑지 않아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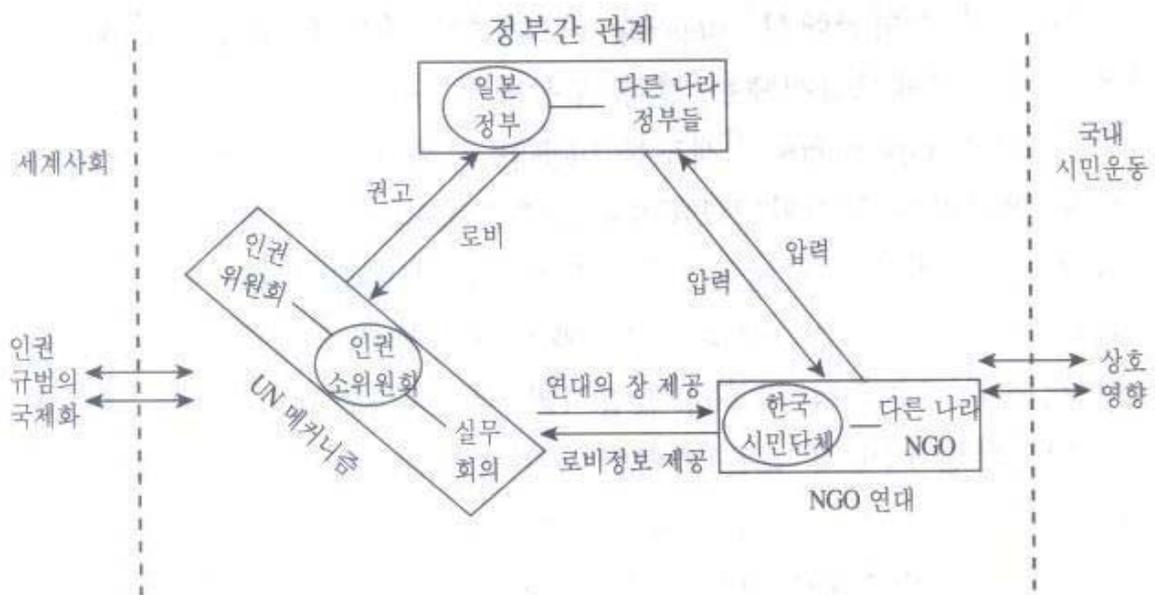
## 2. 인권소위원회의 위원 구성

- 정부가 구성원인 인권위원회에 비하여 26명의 개인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소위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national interests)에서 벗어나 비교적 독립적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독립성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6명의 위원은 아시아, 아프리카, 서유럽, 동유럽 등의 지역이 고려되어 인권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sup>5)</sup> 그것은 그 위원들이 nationality 없는 개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자신의 정부에서 임명받고, 정부대표들이 인권위원회에서 그들의 선출을 위해 활동하므로 정부와 분리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 대체로 강대국 위원들이 학자들로 구성되는 반면, 약소국 위원들은 외교관료 출신이 많다. 위원들이 그들의 국가나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도, 위원들이 그들의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정도는 위원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NGO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 그러나 역시 자국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이며, 이에 따라 강대국/약소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나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예 : TNC문제) 여기서 비교적 양 그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로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관찰된다.

5) 아프리카 7, 아시아 5, 중남미 5, 서방 6, 동구 3명. 임기는 4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1996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박상용 위원이 선출되었고, 2000년에 다시 박수길 위원, 2004년에 정진성 위원이 선출되었다.

### 3. 인권소위원회의 구조

-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를 비롯하여 소위 회기 전 및 회기 중에 열리는 몇 개의 실무회의를 하부 기관으로 두고 있어서 소위에서 다루는 여러 인권문제를 미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와 같이 대체적인 논의의 구조는 실무회의-인권소위-인권위원회-경제사회이사회-총회의 사이클이다.
- 현재, 인권소위 회기 중에 WG on Administration of justice, Transnational corporation, Terrorism이 열리고, 회기 전 후에 WG on Communication, Indigenous Population, Minority,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가 열린다. WG과 유사하지만 이들간의 좀더 긴 기간을 가지고 열리는 Social Forum (빈곤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 인권위원회에서 점차 더 인권소위를 통제하려는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점은 인권소위의 위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 1503 절차, 회기 축소, 활동 통제 (2005년 결정된 새 rule; 예 : TNC문제))
- 소위원회의 논의는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지만, 정부대표와 NGO의 발언도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따라서 위원-정부-NGO의 삼각 축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 메커니즘

#### 4. 인권소위에서의 NGO 활동

- UN의 기관도 아니고, 정부나 개인 전문위원처럼 UN 인권기구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중요성이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NGO에 관해 부언해야 할 것이다. UN헌장은 경제사회이사회가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71조). 경제사회가 규정하는 NGO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NGO는<sup>6)</sup> 협의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갖게 되며, 경제사회이사회 내의 회의에 참가하고, 서면 의견서나 구두발언을 할 수 있다.
- 많은 NGO들이 구두 또는 서면 발언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인권소위 위원을 설득하여 제기하고자하는 문제에 관해 paper( study, report, working paper/ paper at the Working Group, Sub-Commission, approved by the Commission-Special Rapporteur)를 쓰도록 하는 것과, resolution (decision)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경우)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인권소위에서는 인권위원회와 달리 특정국가를 하나의 주제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것과, 특정한 개별이슈보다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보다 큰 틀이 paper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위원들이 NGO의 도움을 받아 paper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인권소위는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외국의 NGO들과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며(예 : Dalit 문제), 제네바에 base를 두고 있는 국제NGO들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UN의 인권메커니즘을 배우는데 다른 어떤 인턴쉽 프로그램보다 도움이 된다.

### III. 인권소위원회의 효과와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NGO를 연결하여 인권소위의 논의를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 경제사회이사회는 ECOSOC 1296(1968)에서 NGO를 정부간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NGO는 경제, 사회적 영역의 활동 목적을 가져야 하고, 폭력 사용을 옹호해서는 안 되며, 정당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예산과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국내문제 제기
- 2) 국제인권문제의 이해
- 3) 새롭게 만들어진 인권규범의 국내 적용

#### IV. 제57차 인권소위원회 보고

##### 1. 회의 아젠다

- 1) Organization of work (UN개혁에 있어서의 인권소위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 2)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policie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segregation, in all countri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olonial and other dependent countries and territories : report of the Sub-Commission under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8 (XXIII) (1503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성에 대해 논의 중) (일본 NGO가 일본군위안부문제 제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거론 NGO)
- 3) Administration of justice, rule of law and democracy (transitional justice, 여성차별문제가 특기사항)
- 4)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ight to development 에 관한 우리 입장 정리가 필요)
- 5)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 (a)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 (b)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 (c)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 6) Specific human rights issues:
  - (a) Women and human rights;
  - (b)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일본군위안부문제 NGO, resoluti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s) 통과 : Office of High Commissioner에서 report 제출할 것을 요구)
  - (c) New priorities, in particular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 7) Draft provisional agenda and adoption of the report:

- (a) Draft provisional agenda for the fifty-eighth session of the Sub-Commission;  
(회기 Aug.7-25로 변경) (item 6이 item 2 다음으로 위치 변경, new priority 이  
슈 중요성)
- (b) Adoption of the report on the fifty-seventh session.

## 2. 한국위원 활동

- Social forum 참가
- 각 아젠다에서 이슈 제기 및 다른 위원 paper에 대한 논평
- "Discrimination based on work and descent" Special Rapporteur (일본위원과 함  
께) : 2006년에 2차보고서
- 2006년 Social Forum에 working paper on "The challenges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ies and strategies to combat poverty and extreme poverty"  
제출
- 2006년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에 working paper on  
"B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agreements and their impact on the human  
rights of the beneficiaries" (with Florizelle O'Connor) 제출
- 2006년 회기 중, new priorities 논의에서 aging 문제 제기할 것을 밝힘.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보장하는 여성인권

신 혜 수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I. 국제인권시스템과 CEDAW .....	15
II.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	17
III. CEDAW가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 .....	19
IV. 주요 논의의제와 쟁점 .....	23
V. 협약의 효과적 국내이행을 위한 과제 .....	25

## I. 국제인권시스템과 CEDAW

### 1. 7대 주요 국제인권협약과 CEDAW

- 7대 인권협약 : (UN채택년도/발효년도/한국비준년도)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 ICESCR (1966/1976/1990)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B규약) ICCPR (1966/1976/1990)
  -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1965/1969/1979)
  -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1979/1981/1984)
  - 고문방지협약 CAT (1984/1987/1995)
  - 아동권리협약 CRC (1989/1990/1991)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CRMW (1990/2003/비준안함)
- 7대 인권협약의 비준과 이행이 국가별 인권상황의 중요한 기준임
- 7대 인권협약간의 상호연관성 강화추세, 상호 mainstreaming
- 7대 인권협약이행 보고서 제출과 심의 시스템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유엔 개혁 진행 중(unified reporting system):common core document + treaty specific report
- 참조 : [www.ohchr.org/english/law](http://www.ohchr.org/english/law)

### 2.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1979년 제정, 1981년 발효
-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협약 (전문, 1조-30조)
- 180개국 비준 (2005년 9월 현재) (CRC에 이어 비준국 수 2위)
- 한국은 1984년 비준, 1985년 발효, 2003년 제5차 보고서 제출, 현재 6차 보고서 초안 마련, 2006년 1월 마감일까지 제출 예정

□ 북한은 2001년 비준, 2002년 제1차 보고서 제출, 2005. 7. 심의

□ 참조 : [www.un.org/womenwatch/daw/cedaw](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 3. CEDAW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CEDAW)

□ 1999년 제정, 2000년 발효 (21개 조항)

□ 71개국 비준 (2005년 9월 현재)

□ 협약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개인이 진정할 수 있는 장치

□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의 경우 위원회의 직권 조사 가능

□ 진정의 당사자 : 개인과 집단(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 국내의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난 후 진정 가능

□ 참조 : [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

### 4. CEDAW와 국가의 의무(state obligation)

□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24조)

□ 협약의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타 모든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제18조)

- 협약 효력 발생후 1년 이내

- 이후 적어도 4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할 때마다

## II.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구성 및 회의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기구(treaty monitoring body)(제17조)
- 23명의 개인 전문가로 구성 (높은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
- 지역별 균형, 다양한 문명과 법체계 반영토록 규정 (현재 아시아 7명, 아프리카 5명, 서유럽 5명, 동유럽 3명, 중남미 3명; 남성위원 1명)
- 협약 당사국이 후보 추천, 2년마다 절반씩 선출 (8월), 4년의 임기, 연임할 수 있음. (정부가 추천하지만 선출되면 개인전문가로 활동)
- 임원(의장, 부의장 3명, 서기)의 임기 2년, 의장은 대륙별로 순환선출
- 회의 연 2회, 각 3주간씩 회의 (New York 유엔본부에서 개최).
- 현재 보고서가 많이 밀려있어서 2006년부터 연3회로의 회기연장을 유엔총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임.

###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임무

#### 1) 보고서 심의

- 매 회기마다 8개국, 연16개국 보고서 심의.
- 심의 절차 : 국가보고서 제출 → 유엔 공용어 번역 → 심의일정 결정 → pre-session working group에서 질문서 작성 → 당사국 답변서 제출 → 심의 → 권고문 송부
- 국가보고서 심의시 검토하는 자료
  - 당사국 정기보고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구두보고(현황update)
  - 타 인권협약위원회 권고문(concluding comments)
  - 국제전문기구(ILO, UNHCR, UNESCO 등등)의 의견서
  - NGO 보고서(shadow report)

## 2) 개인진정 처리와 직권조사

- 여성철폐위원회 내에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구성, 개인진정을 사전 심의해서 위원회에 상정
-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
  - 개인 진정 : 4건 등록, 1건은 접수 불가 결정, 1건은 접수되어 위원회에서 검토, 권고문 채택
  - 조사 : 멕시코의 10여년에 걸친 여성 살해, 실종 문제에 관한 여성단체의 조사요청을 받아들여 2003년 10월 2명의 위원을 조사단으로 멕시코에 파견, 보고서 채택, 조사 종결, 앞으로 이행을 모니터하기로 함.
- 현재까지는 개인진정 건수가 많지 않으나 비준국 수가 늘어나고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Optional Protocol에 따른 개인진정이나 조사에 있어 대외비 원칙 엄수 (confidentiality)

## 3) 유엔 총회에 제안과 일반권고

-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유엔총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제안과 일반권고(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를 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일반권고 25개(가장 최근의 G.R. 25는 한시적 특별조치에 대한 것)
- 특정국가나 사안에 대해 성명서, 편지 등
  - 아프카니스탄의 신정부 수립시 유엔과 해당국에 편지
  - 쓰나미 재해에 대한 성명서
  - 이라크 신헌법 제정시 성명서

### Ⅲ. CEDAW가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

#### 1. 전 분야, 전 여성을 다 포괄

□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제1조)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식, 향유,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목적을 가진 (which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women)
- 성에 기반을 둔 모든 구별/배제/제한(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 모든 영역(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기타) 포괄
- 결혼 여부에 상관없음

#### 2. 국가, 개인, 조직, 기업에 의한 차별, 법적인 차별뿐 아니라 관습, 전통에 의한 차별도 포함

□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즉시’ 국가가 실시할 것 (제2조 a~g항)

-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하고 이의 실현을 법적으로 보장
-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기타 조치
-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설치
- 공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장
- 개인, 단체,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 제거도 국가의 의무로 규정
- 여성차별적인 법, 규정, 관습, 관행을 개선,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여성차별적인 형법의 조항을 모두 폐기할 것

□ 여성과 남성의 어느 한 성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개념, 성역할 스테레오타입에 기반을 둔 선입견, 관습,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남녀행동의사회문화적 패턴을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제5조, a)

□ 국가는 여성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행하도록 규정(제3조)

### 3. 한시적 특별조치의 필요성, 모성 보호

- 실질적 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는 차별로 보아서는 안 됨(제4조, 1항)
  - 그러나 그 결과 별도의 기준(unequal or separate standards)이 유지해서는 안 되며,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 성취되면 중단할 것.
  -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님(제4조, 2항)
- 모성의 사회적 기능,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남녀 공동의 책임, 자녀이익의 우선시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실시할 것(제5조, b)

### 4. 특정분야별 권리보장

- 모든 형태의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의한 착취 금지(제6조)
- 정치적, 공적 분야에서의 여성의 차별 철폐(제7조)
  -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 정부정책의 입안, 시행 참여, 공무담임권
  - 공공, 정치 분야에 관련된 NGO와 협회에의 참여
-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를 동등하게 대표할 기회, 국제조직의 업무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제8조)
- 국적의 획득, 변경, 유지에 있어 동등한 권리,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남편의 국적변경이 아내의 국적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자녀의 국적에 대한 동등한 권리(제9조, 1항과 2항)
- 동등한 교육권(제10조, a~h)
  - 모든 교육기관에 있어서 농촌, 도시 모두 동등한 여건(유치원부터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 동일한 교육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한 자격의 교원, 학교 설비
  -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개념의 제거, 이를 위해 남녀공학의 장려, 교과서 개정, 학교 프로그램 및 교수방법의 개선
  - 장학금 수혜에 대한 동등한 기회

- 계속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기회(성인교육, 문맹퇴치교육 등)
  -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
  -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
  - 가족계획을 포함,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보
- 취업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제11조, 1항 a~f)
- 모든 인간의 불가분의 권리로서의 노동권
  - 취업에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채용기준 포함)
  - 직업선택권, 승진, 직업 안정성, 혜택과 서비스 조건, 직업훈련 등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대우, 노동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
  - 사회보장예의 권리, 특히 은퇴, 실직, 병가, 장애 등 판정, 유급휴가 시
  - 출산기능 보호를 포함, 노동조건에 있어 건강보호와 안전예의 권리
- 결혼이나 모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제11조, 2항)
- 임신과 출산휴가, 결혼으로 인한 해고 등을 금지, 처벌
  - 유급 출산휴가나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전 직업, 연공서열, 급부의 손실없이)
  - 가정과 직장의 양립, 공적 생활예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
  - 임신기간 중 여성을 유해한 일로부터의 보호
  - 과학 기술의 발달에 비추어 11조에 관련된 보호입법은 정기적으로 연구하여 개정 또는 연장(제11조, 3항)
- 건강 서비스(가족계획 포함)를 받을 여성예의 동등한 권리; 임신, 출산, 출산 이후에 필요한 만큼의 무료서비스, 임신 수유기간 중 적절한 영양을 국가가 제공해야(제12조, 1항과 2항)
- 경제와 사회생활에서 여성차별 제거(제13조, a~c)
- 가족수당예의 권리
  - 은행대출, 저당 기타 재정보증 등에 있어서의 권리
  - 오락, 스포츠, 기타 모든 문화생활예의 동등한 권리
- 농촌여성예의 문제, 농촌여성예이 담당한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고 농촌여성예에게도 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할 것, 농촌개발예의 참여와 수혜에 대한 동등한 권리(제14조, 1

항, 2항 a~h)

- 모든 개발계획의 입안과 시행에의 참여
- 가족계획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 적절한 건강진료
-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수혜
- 모든 종류의 공식, 비공식 교육과 훈련 획득
- 취업 등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한 자조집단과 협동조합 조직
-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 농업용자와 대출, 영업, 토지 및 농지개혁, 토지재정착계획 등에 있어서 적합한 기술과 동등한 대우
- 주택, 위생, 전기, 물, 교통, 통신 등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

□ 법 앞에서의 평등, 계약 재산권 행사 등 동등한 법적 권리의 행사, 재판 등에서 동등한 대우, 동등한 거주 이전의 자유(제15조, 1~4항)

□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제16조, 1항 a~h)

- 결혼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
-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 결혼기간 중과 이혼시 동등한 권리와 책임
-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동등한 권리
- 친권, 보호자권, 입양 등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의 성, 직업을 선택할 동등한 개인적 권리
- 재산의 소유, 획득, 관리, 처리, 향유, 처분에 있어서의 양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
- 어린이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 결혼 하한연령을 법적으로 정할 것, 결혼신고를 법적 의무조항으로 할 것(2항)

## 5. 여성폭력도 차별

□ 폭력에 대한 조항은 CEDAW에 없으나, 위원회 General Recommendation No.19 (1992),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1992) 이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노력도 의무보고사항이 되었음.

- 여성폭력과 관련한 보고는 제2조, 3조, 4조, 5조, 6조, 10조, 11조, 12조, 14조, 16조 등 여러 조항에 걸쳐서 보고할 수 있음.

## IV. 주요 논의의제와 쟁점

### 1. 협약 당사국내에서의 CEDAW 협약의 위치와 교육

- 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가?
- 판사, 법조인, 경찰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판결에 인용이 되는가?
- 여성들이 협약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있고, 차별당했을 때 구제절차가 있는가?

### 2. 유보조항

- 여러 나라가 중요한 조항(2조, 9조, 16조 등)을 유보하고 있음.
- 협약 비준시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유보조항은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나(제28조, 2항) 실제로는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음.

### 3. NGO와의 협력과 NGO의 참여

-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건전한 시민사회, NGO의 존재가 중요
- 보고서 작성시 NGO와의 협의를 강조
- 협약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NGO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정부대표단에 NGO 대표의 포함,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 NGO의 정치성에 대한 비난과 의심(북한의 예)

### 4. 성주류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연계

- 여성차별 철폐, 성평등 문제가 여성담당부처만의 이슈는 아닌지? 모든 부처의 이슈 인지?

- 연도별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 전국적으로 지역에까지 협약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 5. 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안

- 성매매 자체에 대해 불법화, 또는 합법화
- 낙태에 대한 불법화, 또는 합법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 6. 보고서 미제출시의 조치

- 비준은 했으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음
- 보고서 미제출시에도 심의할 것을 결정하고 통보

## 7. 권고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concluding comments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

## 8. 조약기구 개편안과 CEDAW

- 유엔 사무총장이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개혁안을 2001년에 제시
- 2002년에 조약기구 위원, 전문가, 인권고등판무관실 등이 모여 논의
- 2003년 조약기구가 각각 논의 후 모두 반대
- 현재 협약의 공통부분을 common core document로 하고, 각 협약에 따른 보고서 (treaty specific reports)를 제출하도록 논의 중.
- CCD와 TSR에 각각 포함될 내용에 대한 토론 계속 진행 중.
- CCD의 작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 설치를 권장, 이를 어디에 둘 것인가?

## 9.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 CEDAW등 조약기구 내에서 국가인권기구를 중요하게 간주함
- 국가인권기구에 별도의 발언시간 허용
- 국가인권기구의 조약기구 내 지위에 대해서는 조약간 회의(ICM)에서 논의할 예정

## V. 협약의 효과적 국내이행을 위한 과제

### 1.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협약의 홍보, 교육,
- 유보조항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권고
- CEDAW위원회가 한국보고서 심의시 참석해서 발언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CCD의 작성을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

### 2. NGO와 CEDAW 모니터링

- NGO 보고서(shadow report) 제출
  - 위원회의 심의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 정부의 협약이행에 대한 NGO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 도출
-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 NGO의 의견제시
-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도록 NGO에서 압력 역할



○ 토론 1 : 국제인권기구 활동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제안

..... 이 대 훈 ■ 인권소위원회 정진성 위원 자문위원

○ 토론2 : 제57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오 병 훈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토론3 : 국제인권 보호 체제와 우리의 인권 외교

..... 임 훈 민 ■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 국제인권기구 활동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제안

## - 유엔 인권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대 훈 | 인권소위원회 정진성 위원 자문위원

### 1. 국제인권 정책협의회 개최

- 인권소위 위원의 구체적 활동과 연구에 관련된 정책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 주제 사례 : 불가촉천민의 상황과 인권보호과제, 다국적기업활동의 인권지침 국제논의 상황과 접근방향, 과거청산에서의 이행기 정의와 인권문제, 세계적 빈곤문제와 젠더, 국제인권법의 국가 이행 의무의 범위와 수준 등.
- 위원, 위원의 연구팀, 국가인권위원회 및 부처 담당자, 관련 전문가, 관련 인권활동가, 관련 연구자와 학생들이 참여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세부 주제 연구, 번역, 출판, 정보공유, 의제개발이 이어지도록 함.
- 국가인권위, 외통부 등은 국제인권정책 논의를 국내에 적용시키는 문제를 집중 검토할 수 있음. 또 정책담당자, 결정권자들의 내부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권운동단체들은 국내 인권쟁점을 국제적으로 의제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참관

- 인권소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식 대표를 보내 정기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57차 회기에서 회기 일부를 참여한 국가인권위 대표가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 대회의 결의안을 소개하면서 ‘대테러조치와 인권’에 관해서 발언한 내용은 주효했음.)
- 정기적인 참여를 통해 인권소위의 의제에 관한 국제적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를 자

료화하여 배포할 경우 국내 인권논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국제인권의제로 개발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

### 3. 유엔인권소위 및 인권위원회 연수프로그램

- 미래 인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으로 추진
- 정기적으로 인권위와 인권소위에 선발된 젊은 연수자들을 신청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파견
- 사전 훈련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실시하고, 현지 연수 후에 보고서 작성토록 함.
- 연수과정은 일반적인 참여경험 이외에 위원 활동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택하도록 해서 위원의 활동을 도우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되도록 함.
- 현지 연수는 이미 제네바 주재 전문적인 민간단체들이 해오고 있는 연수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있음.
- 연수자들의 보고서 작성을 잘 관리하여 매년 충실한 보고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보고서가 누적될 경우 큰 효과를 낼 수 있음.
- 연수자들은 이후 각종 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훌륭한 교육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4. 정보화

- 전문가 양성과 정책 개발, 인권단체와의 협의 강화 등 진일보한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인권논의에 대한 체계적인 한글정보화가 필요함.
- 한글화된 위원들의 활동 기록, 활동보고서, 회의록, 기구의 주요 보고서와 결의안 및 결정사항, 논의 배경자료, 주요 참고자료 등이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위원이 있는 국제인권기구 활동을 망라한 국제인권활동보고서를 매년 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정보가 누적되어 국제인권자료실이 본격적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보화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고 국내 논의를 국제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

## 제57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오 병 훈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1. 유엔개혁에 대한 인권소위 전문가들의 입장

이번 57차 유엔인권소위에서는 유엔인권위 개혁 및 이에 따르는 인권소위 개혁방안이 장시간 토론되었다. 인권소위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출신 요코다 위원이 특별보고관으로서 발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위원들이 자신의 입장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인권소위의 개혁에 대한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의미하는데, 특히 중국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위 개혁은 일부 강대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인권위 개혁안은 금년 9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 형태는 현재 ECOSOC 산하의 인권위가 아니라 유엔 총회 소속 위원회(subsidiary council)의 형태로 지금보다는 소수의 훨씬 정예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형태가 될 것이며, 향후 5년 내에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소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소위 위원간에 아직 유엔개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보가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인권위 개혁논의 과정에서 think thank로서 유엔소위 전문가들의 실질적 위상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인권위 혹은 인권소위 개혁문제에 대하여 위원회 내외에서 어떠한 사전적 협의가 있었는가?

### 2. 정신대문제의 의제화 문제

이번 인권소위에서 일본 NGO측은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대(comfort women)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으며, 일본정부의 각성

을 촉구하다는 조치가 인권소위에서 취해질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신대문제에 관해서는 정진성 위원께서 일찍이 많은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정식 의제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체제 가능성은 어떠한 것인가?

### 3. 국제법의 국내비준 및 이행 촉진문제

이번 인권소위에 참석한 프랑스의 Mr. Emmanuel Decaux 위원은 국제인권법의 국내비준상황 및 이행 관련 발표문에서 북한이 고문반대 협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2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할 정도로 방대하고도 상세한 작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현재 각국의 비준 및 이행상황이 기대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지난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 보여준 국제인권활동의 기세가 상당부분 꺾인 데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범세계적인 인권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조인, 비준 그리고 국내적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모범적인 조치로서 ILO 관리방식을 제안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비준 및 이행상황을 보여주는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통해서 각국이 ILO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Mr. Emmanuel Decaux 논문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대부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안이 앞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인권위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약을 국내법규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행수단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4. 다국적기업과 인권

이번 인권소위에서는 다국적 기업에서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향후 전개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정진성위원은 미얀마에서 대우건설이 투자하여 미얀마정부와 손잡고 하는 가스산업 건설과정에서 현지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인권침해사태에 대하여 몇몇 전문가 위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와 연구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제안은 실무회의에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미얀마사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제안과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

금하다. 특히 한국기업에 관련된 다국적기업문제가 특히 관심이 초점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 5. 인권소위와 NGO 및 NI간의 협력관계

국제기구에서 의제화를 둘러싸고 인권소위 위원과 NGO 전문가들간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권소위 위원으로 참석하신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점에서 소위위원들과 NGO 및 NI 간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이번에 본인은 Ms. Kalliopi Koufa가 발언권을 줌으로써 따라 한국 NI의 자격으로 지난해 9월 개최된 서울세계인권기구대회와 서울선언문에 대하여 그 의미와 내용 개요를 소개하여, 여러 위원들과 NGO 측에 대하여 국제공동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해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는데, 향후 유엔 등의 국제회의 논의과정에서 NI가 담당해야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6. 인권소위와 국가인권위(NI) 간의 관계

정신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출신 요코다 위원은 다른 주제에 비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일본측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한센인 인권관련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이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측은 국제적으로 인권문제를 언급하면서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 내부에서의 평가는 어떠한가? 혹시 각국으로부터 온 26명의 인권소위 위원들은 독립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하면서도, 자국의 대외적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발언하는 정치적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제안에 대해서도 다국적 기업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그룹과 그렇지 않은 후진국 그룹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다는 데에서 인권소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인권소위 내부에 존재하는가?

## 국제인권 보호 체제와 우리의 인권 외교

임 훈 민 |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 I. 국제인권활동의 형태

#### 1. 양자 외교차원에서의 인권 활동

- 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나라에서 인권문제를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
- 양자외교 차원에서의 인권 활동의 유형
  - ① 해당국 정부와의 비공개 협의를 통한 우려 표명 및 개선 촉구
  - ②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개 천명
  - ③ 해외원조, 무역 특혜조치등 경제 특혜(제재) 부여 또는 중단
-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안보, 정치, 경제적 이해와 인권정책이 충돌할 경우 인권문제는 부수적으로 고려되는 경향
  - 결국 국제적인 인권 보호 및 신장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

#### 2. 다자 외교 차원에서의 인권활동

##### 가.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활동

- 국제인권기구, 특히 유엔 체제내의 국제인권기구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즉 주요 인권협약의 제정 및 이행 감시, 특정국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고문·실종·여성·아동 등 특정주체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특별보고관, 실무그룹 등)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상의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공헌

- 한국은 그간 유엔 인권활동 메카니즘의 강화 필요성 적극지지

## 나. 국제인권협약

-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준(legal standad) 정립과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한 충실한 이행 담보가 필수
  - 국제인권협약은 인권을 도덕의 영역에서 법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물
-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협약, 1966년 2개의 인권규약을 채택한 유엔은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과 1990년 이주노동자협약 등 “7개 주요 인권협약” 제정
  - 회원국의 협약 이행 감시를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협약산하위원회가 제출된 보고서를 심의
  - 협약당사국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협약위원회의 보고서 심의에 참가하는 과정은 주요인권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 입장을 점검 및 평가하는 중요한 기회

## 3. 한국의 국제인권활동

- 1980년대까지 국제인권무대에서 한국정부의 활동은 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하여 국내인권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
- 1991년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국내인권상황의 개선과 함께 국제인권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인 활동 개시
  - 인권위원회등 주요 국제인권기구에서 주요의제에 대한 입장표명과 결의안에 대한 표결, 특정국 인권상황 결의안에 대한 표결 등을 통하여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입장 대외적으로 공표
  - 특히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불가분성 문제 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 특히 서구 국가들과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방법에 관한 우리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

○ 국제인권협약 가입

1979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발효중인 7개 인권협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6개 협약에 가입

○ 국제인권분야 요직 및 위원국 진출

- 인권기구 : 인권소위(1996년 이후)
- 협약기구 : 여성차별철폐위원회(1996년 이후), 아동권리위원회(2003년 이후)
- 인권위원회 위원국 : 1993년 이후
- 인권위원회 아주그룹 조정국 수임 : 1998년 및 2005년

## II. 국제인권기구

### 1. 유엔산하기구

#### 가. 총회(General Assembly)

○ 인권 관련 각종 국제협약, 선언, 원칙 최종 채택

-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인권규약, 그 밖의 각종 인권협약과 최근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2002년 제57차 유엔총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인권관련 규범은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확정

\* 다만 총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토의, 채택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다시 채택하는 2차적 역할이 대부분

#### 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현장상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인권침해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침해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 시행

예) \* 남아공과 로데지아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조치

\* 이라크내의 쿠르드족에 대한 보호 조치

- \* 구유고 및 루완다에서의 집단학살 및 인권침해를 재판하기 위한 임시 국제형 사재판소 설립 등

#### 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유엔 헌장 제68조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하여 산하에 1946년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설치
-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대부분의 경우 표결없이 채택
- 인권위원회의 활동중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예산승인, 인권관련 특별보고관 임명, 인권관련 규범 초안 총회 이송 등

#### 라.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 (1) 개 요

- 1946년 창설 이래 유엔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 발전
  - 1947년 18개 위원국으로 활동 시작, 1992년 53개 위원국으로 확대
  - 매년 3-4월중 6주간의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회합
    - \* 3천명 이상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NGO 대표들이 참석
- 우리나라는 93년이래 인권위원국으로 활동중.

##### (2) 인권위원회의 임무(E/38/Rev.1, 1979/36)

- 인권관련 국제협약, 선언의 작성
- 소수민 보호와 각종 차별의 방지
-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조치의 채택 및 권고
- 기타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반적 활동

### (3) 인권위원회의 활동

#### (가) 인권관련 국제입법 활동

- 세계인권선언 및 현재 발효중인 7대 주요 인권협약 중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제외한 모든 인권협약은 인권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 이외에도 협약과 선언의 이행 현황과 방안 등에 관한 토의 및 관련 결의 채택

#### (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활동

-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 토의 및 결의 채택(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235호 근거)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형태의 심각한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비공개 심의(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호 근거)
-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를 통한 특정 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권고 활동

#### (다) 인권증진 활동

- 국제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 활동
  - 예) 지역인권기구가 없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인권증진 활동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활동 지원, 특정국의 인권 및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활동 등을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수행토록 요청

### 마.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1) 개 요

- 1947년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원회의 산하기구
  - 인권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26명의 위원으로 구성
  - 매년 7-8월 3주간의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회합
  - 위원들은 정부의 추천에 따라 선출되나 개인자격으로 독립적 활동
    - \* 1996년 박쌍용 위원, 2000년도 박수길 위원에 이어 2004년도부터 정진성 위원이 활동중

## (2) 역할

- 인권소위는 원래 상급기구인 인권위원회의 think-tank로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권고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되었으나, 그 활동이 점차 확대(각종 인권 침해 조사, 특정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됨에 따라 인권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된다는 비판 대두
  - 결국 2000년 인권위원회 결정으로 공개절차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 채택 중지, 1503 절차에 따른 특정국 인권상황 비공개 토의 기능 중지, 회기 축소 등 인권소위 활동 대폭 축소
- 그러나 인권소위는 여전히 인권위원회의 think-tank로서 조사·연구 활동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활동 수행
  - 특히 인권소위는 다른 어느 기구 보다도 NGO의 토의 참여와 정보제공의 기회가 많은 기구로서 NGO와의 대화채널 역할 수행

## 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1993년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에 따라 제 48차 유엔총회 결의(48/141호)에 의하여 신설
  - 유엔 내의 인권 관련 활동 총괄
- 주요 임무
  - 유엔 체제내의 인권활동을 조정 및 증진
  -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
  -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시행
  - 인권교육, 자문활동 및 기술협력 제공
  -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 지원

## 사. 기타

- 여성지위위원회(CSW),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도 각각 여성, 노동, 교육 분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으로부터의 진정을 처리하는 기능 수행

## 2. 지역인권기구

가. 유럽인권재판소

나. 미주인권위원회 및 미주인권재판소

다. 아프리카 인간과 주민의 권리위원회

## 3. 비정부간기구

- Amnesty International(AI), Freedom House, Human Rights Watch 등은 세계인권 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활동 수행

## III. 국제인권협약

### 1. 국제인권협약의 중요성

- 유엔의 인권활동은 80년대 중반까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정립, 즉 인권 관련 각종 협약 채택, 선언, 규칙 및 권고 작성에 중점 부여
  - 다양한 종류의 인권협약의 발효는 인권의 국제화는 물론 협약당사국의 인권보장 의무를 국제법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결정적 기여
- 7개 주요 인권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는 인권관련 국제규범의 추가적인 작성외에 이미 만들어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 대두
  - \* 현재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전개중 이며 앞으로도 국제인권협약의 적용범위가 폭과 깊이 면에서 계속 확대될 전망

## 〈 국제인권협약을 통한 국제적인 인권증진 〉

- 협약 당사국의 정기 보고서 제출 및 이에 대한 협약산하위원회의 심의, 평가 및 권고를 통해 개별국가의 특정 인권상황에 대한 시정과 함께 국제적 기준에 의하여 특정 인권문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 개인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국제법에 따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협약산하위원회의 결정과 협약 해석 사례가 국제 인권법의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확대

## 2. 인권협약 산하위원회 현황

### 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에 의거, 1977년 설립
  -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활동
  - 규약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 심의 및 의견 채택
  - 일방 규약당사국이 타방 규약당사국의 규약 위반에 관하여 제출한 진정서 심의 및 분쟁 해결
  - 개인의 인권규약 위반에 관한 진정서 심의 및 규약위반 여부 결정
  - 규약의 조문에 대한 해석

###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85/17)에 의거, 1985년 설립
  -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활동
  - 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기보고서 심의

#### 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CERD)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의거, 1970년 설립
  - 협약 당사국회의 선출 임기 4년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활동
  - 당사국의 정기보고서 심의
  -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한 당사국에 관해 제출된 개인 및 집단의 진정서 심의

#### 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7조에 의거, 1982년 설립
  - 협약 당사국회의 선출 임기 4년의 23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활동
  - 당사국의 정기보고서 심의
    - \* 1996-2000간 김영정 위원, 2001년이후 현재까지 신혜수 위원이 활동중

#### 마.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 고문방지협약 제17조에 의거, 1987년 설립
  - 협약 당사국회의 선출 임기 4년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활동
  - 당사국의 정기보고서 심의
  - 협약 제21조 (다른 나라에 의한 진정서 제출) 및 22조(개인 및 집단에 의한 진정서 제출)를 수락한 당사국에 관하여 제출된 진정서 심의
  - 제20조에 의거, 고문진정서에 대하여 직권 조사

#### 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권리협약 제43조에 의거, 1990년 설립
  - 협약 당사국 회의 선출 임기 4년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활동
  - 당사국의 정기보고서 심의

### 3. 한국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65.12. 채택, 69. 1. 발효, 2005. 9월 현재 당사국은 170개국(우리나라 포함)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 66.12. 채택, 76. 3. 발효, 2005. 9월 현재 당사국은 154개국(우리나라 포함)
  - 제1 선택의정서 : 66.12. 채택, 76.3. 발효, 2005.9월 현재 당사국은 105개국(우리나라 포함)
  - 사형제도 철폐에 관한 제2 선택의정서 : 89.12. 채택, 91.7. 발효. 2005.9월 당사국은 54개국(우리나라 미가입)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 : 66.12. 채택, 76.1. 발효, 2005. 9월 현재 당사국은 151개국(우리나라 포함)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79.12. 채택, 81.9. 발효, 2005. 9월 현재 당사국은 180개국(우리나라 포함)
  - 선택의정서 : 1999.10 채택, 2000.12 발효, 2005. 9월 현재 당사국은 71개국(우리나라 미가입)
- 고문방지협약 : 84.12. 채택, 87. 6. 발효, 2005. 9월 현재 당사국은 140개국
  - 선택의정서 : 2002.12 채택, 2003.2 서명 개방, 2005.9월 현재 13개국 비준(우리나라 미비준)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 89.11. 채택, 90. 9. 발효, 2005. 9월 현재 당사국은 192개국(우리나라 포함)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0.5. 채택, 2002.2. 발효, 2005.9월 현재 당사국은 101개국(우리나라 미가입)

- 아동매매, 매춘,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0.5. 채택, 2002.1. 발효, 2005.9월 현재 당사국은 100개국(우리나라 미가입)
- 이주노동자와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1990.12. 채택, 2003.7. 발효, 2005.9월 현재 당사국은 32개국(우리나라 미가입)

#### IV. 인권보장을 위한 NGO의 역할

- 유엔 창설 이래 유엔의 인권규범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인권회의의 활동에 있어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의 참여와 기여가 커다란 역할 수행
  - 일부 NGO들은 유엔헌장 기초 과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여 헌장에 인권규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NGO가 유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96/31에 의거, 경제사회이사회 활동에의 NGO참여를 위해 이들에게 3 종류의 협의지위 부여
    - \* 2005.9 현재 협의지위를 가진 NGO는 2,719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8개의 NGO가 협의지위 보유
- 이후 NGO들은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제출, 인권위원회에의 참여, 개별국가들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국제인권운동의 한 주축으로서 활동
  - \* 지금도 매년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150여개의 NGO 참여
- NGO참여에 대한 선.개도국간 시각차
  - 대다수 개도국들은 대부분의 NGO들이 서구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 개도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다는 인식에 따라 NGO의 활동이 일정수준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 선진국들은 인권증진을 위한 NGO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역할과 업적을 평가하면서 NGO의 보다 광범위한 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강조
- 한국은 NGO들이 인권규범의 이행에 있어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NGO 활동의 강화가 인권의 보편적 실현에 기여한다는 평가하에 각종 인권관련 회의에 NGO의 참여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 견지

## V. 최근 유엔의 인권 메카니즘 개혁 동향

### 1. 개혁 논의 배경

- 유엔 인권기구들의 그간의 기여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의 정치화 경향, 유엔 내 인권 메카니즘의 비효율성 증대 및 실효적 구속력 부재 등 요인들로 인해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대두
- 인권문제의 주류화 및 각국의 범치.인권.민주주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지원 필요성 강조에 따라 그간 주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인권 문제를 보다 중요한 문제로 격상시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 대두
  - \* Kofi Annan 사무총장도 자신의 종합보고서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없이는 인류가 안보와 개발을 향유할 수 없다고 역설

### 2. 개혁 방향

※ 유엔내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조 및 위상 제고와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 유엔 인권위 개혁 및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강화 등의 논의로 구체화

#### 가. 유엔 인권위원회 개편

- 현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격상 개편

#### 나.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강화

- OHCHR이 제출한 Plan of Action에 따라 OHCHR 강화 방안 논의
  - 향후 5년내 현 예산(8천6백만불) 2배 증액 및 인원 증원, 국별 지역사무소 증설 등 국별 활동 강화, 관련 유엔기구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시민사회 및 관련 NGO와의 협력 강화 등 방안 논의

## 다. 인권협약기구 개선

- 인권협약기구 보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Guideline 마련, 제 협약 기구간 연계 발전을 통한 단일 협약기구 설치방안 등 검토

## 3. 논의 현황

- 인권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거의 모든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권이사회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입장 차이 노정
  - 우리를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권이사회 신설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
  - 개도국 진영은 각국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들은 성급한 인권이사회 신설보다는 기존 인권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
    - \* 일부 인권문제 국가의 경우 인권이사회의 신설로 인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또한 다수 개도국은 인권분야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인권이사회 신설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발전권 증진(시민·정치적 권리와 동등하게 취급)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당초 총회 고위급 결과문서 초안에 인권이사회의 구성, 기능 등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상세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비동맹 진영의 반대로 인권이사회 설립에 대한 기본원칙에만 합의
  - 구체내용은 제60차 총회기간중 협의
- 인권고등판무관실 강화 및 인권협약기구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원칙적 지지 입장 표명

## 4. 우리 입장

-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증진 기여국으로서 상설 인권이사회 설립 및 OHCHR 강화 등 유엔 인권 메카니즘 개혁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 인권이사회 설립지지

- 인권의 중요성 및 인권위 개혁 필요성 고려, 총회 2/3 다수결로 선출되는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상설 인권이사회 설립 지지
- 인권위원회의 기존 임무 및 기능 유지
- 규모는 현 인권위 보다는 작은 규모를 지지하나 30-50개국 규모내에서 신축적인 입장
- 인권이사국은 높은 수준의 인권 규범을 지키는 국가여야 할 것
- 총회 산하기구 보다는 안보리나 경제사회이사회와 같은 주요 기관(principal organ)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의 필요

○ OHCHR Plan of Action

- OHCHR의 역량 강화 및 고등관무관의 활동 제고를 위한 동 제안내 각종 방안 환영
- 특히 추가적인 인적.재정적 자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

○ 인권협약기구 개선

- 2006.7 개최 예정인 관련 정부간 회의 대비 입장 검토 중

## VI. 한국의 인권활동의 과제

- 한국의 국제인권활동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비교적 일관된 입장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
  - 빈곤, 독재와 인권침해를 함께 극복한 국가적 경험과 그 과정에서 꾸준히 강화되어 온 시민사회의 인권의식이 큰 역할

### 《국제인권활동 강화와 국내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과제》

① 모든 국민의 인권의식 확대 및 심화

- 인권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인권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 인권의 개념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한국내의 인권문제 뿐

- 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문제 또한 우리의 문제로 보는 시각 필요
-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인권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해 확대 필요
- 2001. 1월 여성가족부와 2001.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남녀평등과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인권의식 또한 점차 고양되는 추세
- 국가인권 실천 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이 수립되고 추진되면 보다 명실상부한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대

## ② NGO 활동 활성화

-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인권 NGO의 활동은 보다 조직화되고 그 활동분야 또한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발전의 여지와 필요성 다대
-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도 강화 필요

## ③ 정부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일반사회의 보다 큰 관심과 참여

- 국제인권활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참여를 통해 국내인권증진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보호 활동에도 보다 큰 기여 가능
- \* 국제인권활동의 중심인 유엔에서도 각국 정부대표가 중심이 되어 NGO의 참여 속에 기존의 인권문제 및 새로운 유형의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참 고 자 료**

- 제57차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안와 결정사항

# 제57차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안과 결정사항<sup>1)</sup>

번역 : 송 신 혜 | 서강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 1. 57차 회기 개요

### A. 개회, 기간과 회의 수

- 2005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57회 회기를 개최. 21회의 회의를 열고, 그 중 4회는 비공개로 개최.

### B. 참석

- 인권소위원회 위원들과 유엔 회원국, 비회원국, 정부간 기구, 유엔 기구, 유엔 전문기구, 비정부 기구의 참관인.

### C. 결의안과 문서

- 소위원회는 32개의 결의안과 14개의 결정문을 채택함.

### D. 위원 선출

- 위 원 장 : Vladimir Kartashkin
- 부위원장 : Marc Bossuyt, Florizelle O'Connor, Ibrahim Salama
- 보 고 관 : Yozo Yokota

### E. 의제의 채택

- E/CN.4/Sub.2/2005/1 문서에 기재된 의제가 표결 없이 채택됨.

### F. 업무 실행 및 구성

- 표결없이 다음과 같이 구성:

---

1) E/CN.4/Sub.2/2005/L.11, L.11/Add.1, L.11/Add.2)

- (a) 사법(administration of justice) : Ms. Hampson, Ms. Motoc, Ms. Rakotoarisoa, Mr. Sattar, Mr. Tunon Veilles.
- (b)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과 운영방식 : Mr. Alfonso Martnez, Mr. Alfredsson, Mr. Biro, Ms. 정진성, Ms. Warzazi.
- (c) 대 테러 활동 시 인권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세부 지침과 원칙 : Mr. Biro, Mr. Chen Shiqiu, Ms. Koufa, Ms. O'Connor, Mr. Salama.

## G. 그 외 주요내용

- Hampson 위원이 소위원회의 활동의 구성 및 내용과 결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 Decaux위원이 보고서 주제 선정 및 준비에 연관된 소위원회의 활동의 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 H. 인권소위원회를 포함, 유엔의 개혁

- 2005년 7월 28일의 다섯 번째 회의와 8월 4일의 열 번째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은 소위원회와 인권조직들을 포함, 유엔 개혁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이에 관련하여, 2005년 7월 26일 세 번째 회의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 대표는 "보호와 권한부여"로 명명된 인권고등판무관 행동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 (a) 인권소위원회의 개혁

- 2005년 8월 11일 스무 번째 회의에서 제안자 Alfredsson위원에 의해 결의안초안 E/CN.4/Sub.2/2005/L.3이 철회.

### (b) 인권소위원회 활동방법

- 2005년 8월 11일 스무 번째 회의에서 Warzazi위원이 결의안초안 발표, 수정 결의안 초안 표결 없이 채택됨.

### (c) 2006년 인권소위원회 실무그룹 구성

### (d) 유엔 인권기구 개혁에 있어 독립전문기구의 역할

- 동 회의에서, Hampson위원은 결정문초안 E/CN.4/Sub.2/2005/L.48을 발표, 수정 결정문초안 표결 없이 채택됨.

## 2. 결의안과 결정사항 요약<sup>2)</sup>

### A. 결의안

2005/1.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의 완전한 금지

2. 근 시일 내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권장.
3. 모든 국가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약과 선택적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촉구.
4. 고문 문제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치하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특별보고관이 각 국가들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요청.
5. 의료전문인의 공모가 개입된 경우를 포함, 고문과 학대 행위를 비난하고 사무총장에게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윤리 원칙을 널리 알리며 58회 회기에 소위원회에 그 효과를 알리도록 권함.
6. 모든 국가들이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메커니즘 발달시킬 것을 권장.
8. 다음 회기에서 계속 논의

2005/2. 무력 분쟁 동안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의료 시설, 수송기와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 군사 행동의 금지

1.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의료 시설, 수송기,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
2.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기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국제, 국내 무력 분쟁 상황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의료 시설, 수송기, 의료진 문제를 긴급히 검토하도록 요청.

2005/3. 성 폭력과 관련한 책임과 유죄 확립의 난관

1. 사무총장이 특별보고관에게 특히 회원국,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 기관, 국제적 정부 기구, 비정부 기구와의 접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2. 특별보고관에게 58회 회기에서 소위원회에 초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

2) 각 항목의 번호는 원 문서의 번호. 단 일부 불일치.

2005/4. 국제 인권 조약의 보편적 이행

2. 사무총장이 특별보고관에게 특히 회원국,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 기관, 국제적 정부 기구, 비정부 기구와의 접촉에 있어서, 적합한 시기에 설문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3. 특별보고관에게 58회 회기에 소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2005/5.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의 차별

2.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이 58회 소위원회 회기 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2005/6. 인권 향유에 미치는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과 운영 방식의 영향

2. 실무 그룹과 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58회 회기에 소위원회와 실무 그룹에 제출할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
  - (a) Gaspar Biro : 초국적 기업과 타 사업체의 활동과 관련한 인권의 보장에 있어서 국가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
  - (b) 정진성과 Florizelle O'Connor : 양자간, 다자간 경제협약과 수혜자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3. 58회 소위원회 회기 실무 그룹 첫 회의에 국제 통화 기금, 세계은행, 세계 무역 기구, 유엔 개발 프로그램, 국제 노동 기구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
4. 실무 그룹의 8번째 회의의 의제를 다음과 같이 결정
  - (a) 인권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성에 관한 진전사항 검토
  - (b) 여러 사회에서 기업이 인권 침해를 일으키거나 조장할 수 있는 상황의 고찰
  - (c) 기업 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가능한 방법과 수단의 고찰
  - (d) 특정 인권 침해의 경우의 적절한 대응 강구
5. 실무그룹에게 58회 회기에 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2005/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 2항에 기술된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2. 특별보고관에게 58회 회기에 소위원회에 중간 보고서를, 59회에는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요청.

3.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

#### 2005/8. 사회 포럼

3. 2005년 사회 포럼의 혁신적인 결론과 권고에 주목하고,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 기구, 노동조합과 타 관련 기구들에게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전략을 고안하고 시행할 때 그 결론과 권고를 고려하도록 요청.
4.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대표, 회원국, 시민사회, 정부간 기구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포럼의 독특한 성격을 재확인하고 현재 유엔 개혁에 있어서 유엔의 인권 체계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사회 포럼의 공헌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5. 매년 사회 포럼에서는 전 소위원회 결의안에 정해진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차기 회의는 2006년 제네바에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날짜에 개최될 것이고 2006년 사회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의 전쟁 그리고 참여권 : 여성의 역할" 로 결정함.
6.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구 지위를 가지는 비정부 기구, 제네바 밖의 타 비정부 기구, 노동조합, 국제통화기금, 빈곤퇴치 그룹 등의 포럼 초청을 반복함.
7.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게 포럼에 자문과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부 기구, 민간 부문과 국제 기구와의 파트너십의 구축을 포함한 효과적인 수단 강구를 요청.
8. 정진성위원에게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와 관련된 과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여 2006년 포럼에 제출할 것을 요청
9.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음 회기에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2006년 회기 주제 발표를 요청.
10. 58회 회기 시, 소위원회에 권장 사항과 결의안을 포함, 포괄적인 상세한 토론의 요약문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11. 사무총장에게 포럼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개인과 조직들을 초청하며 필요한 현실적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청.

2005/9. 극도의 빈곤의 퇴치를 위한 현재의 인권 기준의 이행

1. 극심한 빈곤은 남성, 여성,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근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즉각적인 경감과 궁극적 근절이 국제 사회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2. 특별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 시 수행한 활동의 사정을 포함하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58회 회기에 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
3. 특별 그룹에게 지역 세미나를 통해 지역, 국제 정부간 기구, 비정부 기구, 각국의 협회, 학자 등과의 포괄적인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을 요청.
4. 인권위원회가 특별 그룹을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특별 그룹으로 대체하도록 요청.

2005/10. 민간인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

1. 어떤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 이유도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
2.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가담한 사람들은 국제 범죄자이고 경찰과 치안부대 소속의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
3.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국제 범죄자이고 이러한 행동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
4.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국제 범죄자이고 이러한 행동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
5.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 행위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러한 의도에서 시도된 공격 행위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국제 범죄자이고 이러한 행동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

2005/11. 특별 절차 항구 초청

인권위원회가 국가별 특별절차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가 주제별 특별절차를 항시 초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종료시켜야 한다고 인권 위원회에 요청함

## 2005/12. 개인의 이송

1. 현 결의안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이양 또는, 추방이나 다른 법적인 제재에 의한 이양을 포함, 국가간의 영토 또는 국가 기구 사이의 모든 비자발적 이양을 언급함을 선언.
2.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의 영토밖에 있을지라도 그 국가는 효력이 닿는데 까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강제추방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추방해서는 안 되는 의무, 송환해서는 안 되는 의무, 그 외의 경우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로 이송했을 때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를 이송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주목.
3.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그가 고문이나 잔인한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곳 또는 그가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은 국제관습법 위반임을 결정.
4.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하거나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특히 인권 조약 기구나 인권에 관한 위원회의 특별 조직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묵인되는 곳의 경우, 이송되는 사람이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이 같은 상황 하에서는 이송되는 국가 당국에 의한 어떤 행동이나 보장에 의해도 그러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5. 실제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송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
6. 실제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력하게 권고.
  - (a) 어떤 사람의 이송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이 그 사람이 이송될 나라로부터 그 사람이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만하고 효과적인 약속 또는 공약을 찾고 받을 경우.
  - (b) 어떤 사람의 이송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이 그 사람이 억류될 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서로 만들어질 경우. 이 경우 이 정부 기관은 이송된 사람의 건강을 검사할 수도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이송된 나라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인터뷰도 할 수 있어야 함.
  - (c) 이송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이 문서로 정기방문을 적용시키는 경우.

7. 만약 사형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적용시키려고 시도되지 않을 거라고 문서화 된 약속을 받는다면 사형제도를 금지했거나 중지한 나라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 되어지는 어떤 사람을 사형제가 아직도 실행되는 나라로 이송하지 않을 것을 요구.
8. 어떤 사람도 재판 없이는 평생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고.
9. 중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이송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국가 내에서 적절히 처벌할 것을 강조.
10. 관련 사법, 행정 당국은 국제 인권, 난민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고, 잠재적인 이송자에게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송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고려.

#### 2005/13. 사법에 관한 실무 그룹

1.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인권에 대한 유엔의 기준을 완벽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
2. 회원국들에게 유엔 기준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과 효과적인 법적, 기타 기제와 절차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재차 요구.
3. 인권을 준수하는데 있어 불처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권 결의문을 시행하는 것을 환영.
4. 분쟁 상황과 분쟁 후 상황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 노력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강조.
5. 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채택된 결의안 2005/35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구제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환영하며, 불처벌과의 투쟁이 인권보장의 근본적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
8. 인권소위 위원들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긴밀한 협력아래 다음 회기 동 실무그룹에서 ‘이행기 정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몇몇 비정부기구의 제안을 환영함.
9. 국가 인권 기관뿐 아니라 국가들, 유엔 조직, 전문 기관과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이 차후 회기에서 실무 그룹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

2005/14.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국제 요원의 책임

1.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과 권장 사항을 승인.
2. Franoise Hampson위원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국제 요원 international personnel 의 책임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준비하도록 하여 58회 회기에서 초기 보고서를, 59회 회기에서 중간 보고서를, 60회 회기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4. 유엔 본부를 방문하고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는 국가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는 것을 포함,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
5. 인권위원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Hampson위원의 임명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Hampson위원에게 58회 소위원회 회기에 제출할 확대 연구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
6. 인권위원회 결의안 제안
7.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

2005/15. 군사재판소를 통한 사법 집행 문제

1.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 하에 군사 재판소를 통한 재판 집행 문제에 관한 군사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들의 두 번째 세미나 조직을 희망함.

2005/16. 인권,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대한 부패의 영향

1.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상세한 반부패 법을 채택, 이행하도록 촉구.
4. 정치 지도자들에게 각자의 국가에서 자기 존중, 성실, 정직의 표본이 될 것을 권장.
5. 반부패 유엔 협약에 조인한 국가들에 주목하고 조인하지 않은 국가들에 협약 조인을 권장.
6.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부패의 청산을, 특히 법 집행 기관과 사법부의 부패를 청산할 것을 권장.
7. 시민 사회, 특히 언론과 비정부 기구들이 부패의 방지와 처벌 과정에 관여하도록 요구.

#### 2005/17. 발전권

1. 소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은 발전권의 일과 관련되어 있고 중요하고 그것은 발전권과 발전에 관련된 활동들과 통합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
2. 인권을 발전권에 접근시켜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
3. 발전에 있어서의 인권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지표의 타당성과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지표 자체의 적합성과 그 지표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단호히 믿음.
4. 발전권의 성공적 이행에 있어 굿거버넌스가 중요함을 믿음.
5. 구체적 자금의 출자가 발전권을 지원하는 데에 중요하고 이 문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감수성과 개방성을 요구함을 믿음.
6. 58회 회기에서 현재 결의안의 이행 성과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

#### 2005/18. 인권소위원회의 소수민에 관한 실무 그룹

1. 인권위원회에 경제사회이사회가 소수민에 관한 실무 그룹이 58회 그리고 그 후 회기 소위원회에 앞서 5일 동안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요구.
2. 실무 그룹이 계속해서 소수민이 직면한 문제들을 밝혀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들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도록 지시.

#### 2005/19. 두 번째 세계 원주민을 위한 10년

1.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원주민에 관한 실무 그룹에 의해 추천된 활동 목록과 현재 결의안을 두 번째 10년 the Second Decade의 책임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
2. Decade의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the Second Decade의 활동을 기획, 조직,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원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계속하여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
3.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the Second Decade의 활동 프로그램의 인권 부문 활동에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the Second Decade 책임자와 협력하여 취하도록 요청.
5. 2010년 2015년 총회가 the Second Decade에 대한 중기, 말기 검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주민에 관한 실무 그룹에게 the Second Decade의 활동 프로그램의 인권 부문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요청.

6. 실무 그룹이 매년 채택하는 결론과 추천 사항이 the Second Decade의 틀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의 성공적인 기획과 이행에 중요함을 밝힘.
7. 2005년 7월 21일 세계 원주민의 날 준수를 환영함.
8. 세계 원주민의 날이 원주민에 관한 실무 그룹의 24회 회기의 4째 날에 제네바에서 계속하여 개최할 것을 권장.
9. the Second Decade의 책임자가 정부와 타 잠재적 기부자들이 the Second Decade를 위한 자발적 펀드에 기부하도록 호소할 것을 권장.
10. 원주민 문제에 관한 영구 포럼, 원주민에 관한 실무 그룹과 원주민의 인권 상황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이의 협력을 구축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환영.

2005/20. 원주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거주민의 인권에 관한 함의를 포함, 환경적 이유로 사라지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법적 의미

1.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과 권장 사항을 승인.
2. Françoise Hampson위원을 원주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거주민의 인권에 관한 함의를 포함, 환경적 이유로 사라지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준비하도록 하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3. 특별보고관에게 58회 회기에서 초기 보고서를, 59회 회기에서 성과 보고서를, 60회 회기에서 최종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4.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5. 무슨 이유로든 인권위원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Hampson위원의 임명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Hampson위원에게 58회 소위원회 회기에 제출할 확대 연구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

2005/21. 난민들에 대한 주택 및 재산 배상

1. 국가가 모든 난민이 귀국할 권리를 보장, 임의로 혹은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주택, 토지와 재산을 반환하고, 이 같은 권리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

- 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법적, 행정적 절차들을 발달시킬 것을 촉구함.
2. 국가가 배상 과정에서 편견을 갖게 하는 법을 채택하거나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함.
  3. 모든 난민이 배상 과정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4. 난민에 대한 주택과 재산 배상에 관한 원칙들을 지지하고 국가, 국가간 기구와 다른 관련 주체들이 그 원칙들을 적용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
  5. Mr. Pinheiro에게 인권 연구 시리즈 내에 출판될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주택과 재산 배상에 관한 연구 업데이트 요청
  6. 사무국이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와 타 유엔 조약 감시 기구, 지역 인권 기구들에 주택과 재산 배상(E/CN.4/Sub.2/2005/17)에 대한 원칙들과 해설서를 전달하도록 요구

#### 2005/22. 직업과 출신에 근거한 차별

1. 해당 국가들에게 차별 철폐 조치와 공교육 프로그램 등의 적절한 형태로 직업과 출신에 근거한 차별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그러한 조치들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
2. 요조 요코다와 정진성 특별보고관의 직업, 출신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예비 보고서(E/CN.4/Sub.2/2005/30)를 환영함. 요조 요코다와 정진성 특별보고관은 직업과 출신에 근거한 차별 행위는 심각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 위반이고 이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정부들은 직업과 출신에 근거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차별의 성격과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 직업과 출신에 근거한 차별의 어떤 행동도 금지, 위반자들을 처벌, 정부 관리의 교육, 훈련, 대중들의 인식을 향상, 희생자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와 배상을 제공, 차별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조.
3. 특별보고관들이 제안한 정부와 국내 인권 기관, 관련 유엔 조직, 전문 기관과 비정부 기구들에 예비 보고서에 설문지를 첨부 발송을 승인함.
4. 설문지 수여자들이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답할 것을 요구
5. 특별보고관들의 2006년 3월 중순/4월에 제네바에서 협의회, 자금이 허락할 경우, 58차 인권소위원회의 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지역 워크숍 개최안을 지지함.

6. 특별보고관들에게 58차 인권소위에 제출할 성과 보고서에 분석, 설문지, 협의회, 지역 워크숍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청.
7. 직업과 출신에 근거한 효과적인 차별 철폐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계속해서 힘써줄 것을 요청.
8. 특별보고관들이 관련된 조약 기구들과 유엔 기관들,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해나갈 것을 권장.
9. 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특별보고관들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2005/23. 토착 주민에 대한 실무 그룹

2. 조약 기구들과 주제별 절차들이 업무에 있어서, 각각의 권한에 적합하게 원주민들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실무 그룹에 조언을 하도록,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58 of 20 April 2004의 3,4 단락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반복해 언급함.
3. 현재 실무 그룹의 회장-보고관이 특별 절차와 실무 그룹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의 실무 그룹의 회장과 독립적 전문가들, 특별보고관, 대표자들의 13회 모임에서 발표해 줄 것을 요청.
4. 회기 간 실무 그룹을 지원할 개념적 설명, 분석에 있어서 전문가 조직으로서 요청 하에서 실무 그룹이 협력할 것을 반복함.
5. 실무 그룹이 원주민 문제에 관한 영구 포럼(the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과 원주민의 인권 상황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의제4에 대한 연례 논의 동안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을 결정.
6. 실무 그룹에게 영구 포럼과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법과 수단을 계속하여 강구해 보도록 요청.
7. 실무 그룹의 회장-보고관이 2006년 제5회 원주민 이슈에 관한 영구 포럼에 한 주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승인을 요청
8. 24회 회기에서 실무 그룹이 "비 토착 조직, 집단, 개인에 의한 원주민 토지의 군사적 목적의 유용"을 주요 주제로 채택하도록 결정.
9. 24회 회기의 실무그룹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1.임원 선거 2. 의제 채택 3.업무

- 조직 4.발전 검토:(a) 일반 토론 (b) 주요 주제 : "비 토착 조직, 집단, 개인에 의한 원주민 토지의 군사적 목적의 유용" (c) 원주민과 분쟁 방지와 해결 5. 기준 설정 : (a) 기준 설정 활동에 대한 미래 우선 순위 (b) 진행 예정 가능 신규 연구 6. 다른 문제 : (a) Second 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b) 타 유엔 조직과의 협력 (c) 반 인종 차별 세계 회의 후속조치 (d) 원주민에 대한 the Voluntary Fund의 상태 (e)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 초안 7. 특히 원주민과 관계되어, 환경적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국가와 지역의 인권 상황 8. 보고서 채택
10. 실무 그룹의 24회 회기를 위해 현재 결의안의 11 단락에 근거하여 주석을 단 의제를 준비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
  11. 다양한 참석자들 사이의 좀 더 활발한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회장-보고관과의 협의 후, 실무 그룹의 24회 회기에서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 참석자들에게 의제 항목 4 하에서의 이슈들의 조직에 대해 알리도록 초청.
  12. 실무 그룹에게 수정된 초고 원칙들과 원주민의 유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유롭고, 앞선, 정보에 근거한 합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이슈를 재검토하도록 요청
  13. 모든 국가들이 원주민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의 증진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 기울이고, 주민들의 비 토착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보호할 때에 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하도록 요청.
  14. 미구엘 알폰소 마르티네즈에게 2004년 8월 9일 2004/15 결의안에서 소위원회에 의해 요청된 추가 업무 보고서 제출을 요청
  15. 모든 국가들이 24회 회기에서 실무 그룹에게 분쟁 해결과 방지를 위한 기제들에 관한 정보 제공하도록 요청.
  16. 총회에 제출할 the Second Decade 의 활동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the Second 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코디네이터에게 실무그룹이 제안한 활동 목록이 포함된 23회 실무그룹 보고서 별첨 4를 전달하도록 요청
  17. 실무 그룹이 고등 판무관실에 원주민, 분쟁 해결과 방지에 관한 워크샵을 조직, 개최에 필요한 지출금을 2006-2007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을 재차 승인.
  18. 고등 판무관실이 2006년 봄에 원주민, 광산 및 타 민간 부문 기업과 인권에

관한 두 번째 워크숍을 조직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

19. 고등 관무관실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와 원주민 사이의 조약, 합의와 건설적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소위원회 결의안 2004/15에 언급된 유엔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 완벽한 조직적 기술적 준비를 위해 원주민 조직자와 협력하도록 요청.
20. 향후 연구 활동에 있어 실무 그룹에 위한 평가 기준으로서, 그리고 업무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고등 관무관실에 24회 회기에서 실무 그룹에 인권을 포함 원주민들의 권리 상황에 관한 모든 연구, 보고와 타 리서치의 최신 편집을 실무 그룹에 제출하도록 요청.
21. Mr. Alfonso Martinez에게 25회 회기에 실무 그룹에, 59회 회기에 소위원회에 제출할 세계 여러 지역의 원주민들의 생활에 계속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국 주의 시대의 결과에 관한 업무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
22. 정부, 원주민, 정부 기구, 비정부 기구와 원주민들을 위한 유엔 자발 기금 (the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과 the Voluntary Fund for the Second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에 상당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호소.
23. 인권위원회가 경제, 사회 이사회에 2006년 58회 소위원회 회기에 앞서 원주민에 관한 실무 그룹을 위한 10개 모임을 열도록 승인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

#### 2005/24. 한센병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1. 업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과 권고를 승인
2.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수용 법을 폐지하고 환자들이 원하면 외래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요청.
3. 요양소, 격리 지구, 병원이나 지역 사회에 강압적으로 수용되었던 기존에 한센병을 앓았던 환자들에게 정부가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요청.
4. 정부가 한센병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차별이라도 즉각적으로 금지하도록 요청.
5. 한센병과 환자들과 가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커리큘럼에 한센병 교육을 포함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권장.
6. 자금이 가능하다면, 의사, 사회 복지사, 전문가, 비정부 기구와 해당 정부 관리

들 뿐 아니라 기존에 한센병을 앓았던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지역 세미나 조직 제안을 승인.

7. 요조 요코다를 한센병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준비할 임무를 가진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특별 보고관에서 58회 소위원회 회기 때, 예비 보고서를, 59회 회기에서는 진행 보고서를 60회 회기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
9. 특별보고관이 세계 보건 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관계 조직과 대화하도록 요청.
10.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특별 보고관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

#### 2005/25.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술적 협력과 역량 개발

1. Gudmundur Alfredsson와 Ibrahim Salama를 인권 분야의 국제, 지역, 양자적 기술 협력에 있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준비하는 임무를 가진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2. 사무총장에게 특별 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3.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유엔 개발 프로그램, 유니세프와 전문 기관들이 특별 보고관의 문의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도록 요청.

#### 2005/26.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

1. 인권 조약 기구들이 국가 보고서를 검토할 때,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인권 교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 교육이 조약 기구 회장 연례 모임에 의제로 포함되도록 권장.

#### 2005/27. 무력 분쟁 동안 자행되는 체계적 강간, 성 노예 제도 및 유사노예제 관행

1. 체계적 강간, 성 노예 제도와 유사노예제 관행은 아직도 사회를 파괴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민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쇼크는 개인적으로만 회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분쟁 후 사회 전체의 재건 역시 위협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5. 무력 분쟁 동안 자행된 성 폭력에 있어서 불처벌의 악습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는 배상되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한 보상과 효과적인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함.
3.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국가가 무력 분쟁 동안의 체계적 강간, 성 노예 제도와 유사노예제 관행 문제에 대한 인권 교육과 대중의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도록 권장.
4. 인권고등판무관에게 58회 회의 때 소위원회에 체계적 강간, 성 노예 제도와 유사노예제 관행 문제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2005/28.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습

1. 비정부 기구를 통해, 특히 the Inter-African Committee on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를 통해 여성 할례와 같은 부정적 관습을 타파하는 데 있어 거둔 성과를 환영.
2. 그러나 부정적 관습의 지속과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
3. 인권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습의 원인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도록 할 것을 요청함.
4.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비정부 기구들, 특히 the Inter-African Committee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요청.
5. 부정적 관습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해당 국가들이 특히 교육, 정보, 훈련을 통해 모든 형태의 부정적 관습의 악영향에 관련하여 국내 여론의 인식을 확대하고,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심화하도록 호소.
6. 여성 문제를 다루는 모든 비정부 기구들이 다양한 부정적 관습과 그것을 근절시킬 방법과 수단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요청.
7. 국제사회에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관습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에게 물질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호소.
8. 모든 정부들에게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습의 제거를 위한 행동 계획의 이행에 전념할 것을 요청.
9. 1985년 이래로 거두어 온 성과를 검토하고 행동 계획의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를 위한 자금의 조달을 호소하는 내용의 제안을 반복.

10.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세미나의 조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요청.
11. 아프리카 헌장에 아프리카 연합이 의정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정부들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국내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촉구.
12.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이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많은 활동들, 특히 2월 6일 여성 할레 폐지의 날에 대해 환영을 표함.
13. 부정적 관습을 타파하기 위한 많은 국가들의 헌신을 환영하고 그들의 노력을 심화하도록 권장.

2005/29.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실무 그룹의 보고서

1. 국가들이 노예제 관련 문제에 관한 조약들을 비준하도록 권장.
2. 국가들이 1926년과 1956년의 노예 협약과 1949년의 인신매매와 매춘 금지를 위한 협약에 기술된 인권 기준 이행에 관하여 현대 형태의 노예제에 관한 실무 그룹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
3. 인권 조약 기구와 전문 기관의 후원 하에 설립된 기구들이 각각의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노예제에 관한 협약들 하에서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장.
4. Mr. Ibrahim Salama에게 인권 차원에서의 매춘에 관한 연구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활동 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5. 다음 실무 그룹 회의에서 인신매매, 매춘, 강제 노역, 국내 노동자 착취, 강제 결혼과 가정 폭력 등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토의할 문제들에 포함시키기로 한 실무 그룹의 결정에 주목.
6. 31회 회기의 초점을 매춘 문제의 인권적 차원 및 타인에 의해 강제된 매춘, 인신매매로부터 얻어진 이익이 국제적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둠.
7.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국가, 국제 기구와 국내 인권 기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현재 결의안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요청.

2005/30. 현대판 노예제와 유엔자율신탁기금

1. 신탁기금위원회가 연례 실무 그룹 회의에 가능한 많은 국가의 개인과 조직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증진할 것을 요청.
3. 대중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현 노예제의 희생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자금 신탁 위원회의 지속적인 공헌을 요청.

2005/31. 테러와의 전쟁 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해 상세한 원칙과 지침을 고안하는 실무 그룹

1.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제 인권, 인도주의, 난민 법 준중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
2.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권장 사항을 승인
3.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게 국가들, 유엔 체계의 조직, 전문 기관, 조약 기구와 타 유엔 인권 기구, 비정부 기구, 국가 인권 기관, 지역 내 정부간 조직들에게 소위원회의 실무 그룹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권장 사항에 주목할 것을 요청.

2005/32. 소위원회 활동 방법

1. 사무국에게 문서 E/CN.4/Sub.2/2005/5를 조약 기구들에 공식적으로 전송할 것을 확인하도록 청하고 이들 조직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함.
2. Mr. Decaux에게 소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담은 상세 업무 보고서를 59회 회의 시 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
  - (a) 소위원회 구성원들이 준비하고 논의한 연구와 업무 보고서의 수
  - (b) 소위원회의 우선 순위의 결정과 특정 주제 토론 시 발생 가능한 불일치들을 확인
  - (c) 조약 기구, 관련 기관, 특별 절차, 유엔 조직과의 건설적인 협력
  - (d) 소위원회 설립 이래로 소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주요 연구 과정의 기록을 살펴 보는 과학적 출판물 준비를 위한 양식

## B. 결정사항

2005/101. 의제 항목 3 하에서 사범에 관한 회기 중 실무 그룹의 설립

2005년 7월 25일 열린 1 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의제 항목 3 하에서 법 집행에 관한 회기 중 실무 그룹의 설립을 표결 없이 결정함. 실무 그룹은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 : Hampson위원, Motoc위원, Rakotoarisoa위원, Sattar위원, Tunon Veilles위원.

2005/102. 의제 항목 4 하에서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운영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회기 중 실무 그룹의 설립

2005년 7월 25일 열린 1 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의제 항목 3 하에서 법 집행에 관한 회기 중 실무 그룹의 설립을 표결 없이 결정함. 실무 그룹은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 : Alfonso Martinez위원, Alfredsson위원, Biro위원, 정진성위원, Warzazi위원.

2005/103. 의제 항목 6(c)하에서 테러와의 전쟁 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고안하기 위한 회기 중 실무 그룹의 설립

2005년 7월 25일 열린 1 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의제 항목 3 하에서 범 집행에 관한 회기 중 실무 그룹의 설립을 표결 없이 결정함. 실무 그룹은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 : Biro위원, Chen Shiqui위원, Koufa위원, O'Connor위원, Salama.위원

2005/104. 요약 기록

2005/105. 인권과 국가 주권

2005년 8월 8일 열린 15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Vladimir Kartashkin 위원에게 재정적 합의 없이, 특히 국가의 권리로서 뿐 아니라 책임으로서의 주권의 개념, 국가 주권의 제한에 대한 근거와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의 범위, 국가 주권과 국제 인권법, 국가 주권과 국제적 인권 침해에 관한 인권과 국가 주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기로 표결 없이 결정. 소위원회는 Kartashkin위원에게 58회 회기에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2005/106.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

2005년 8월 8일 열린 15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Franoise Hampson 위원과 Mohamed Habib Cherif위원에게 재정적 합의 없이,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이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58회 회기에 사범 집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표결 없이 결정.

2005/107.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정보 요청

2005년 8월 10일 열린 19 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2명의 기권, 19명 찬성, 반대 없이 다음의 정보를 인권소위원회에 매년 회기 시작 전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

- (a) 긴급 사태를 공포한 국가의 목록
- (b) 특별 절차를 수용하는 국가의 목록
- (c) 특별 절차를 거부한 국가의 목록
- (d) 인권위원회 회원국 목록
- (e) 인권위원회 위원국 중에서 특별절차를 수용한 국가의 목록

(f) 인권위원회 의제에 관련된 국가 목록

(g) 의제 항목 9 하에서 고려되나 특별절차를 거부한 국가 목록

(h) 특별절차에 대해 권고사항을 부적절히 이행, 혹은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가 목록

2005/108. 국제 인도주의 법과 인권법의 관계에 대한 합의에 관한 실무 그룹의 설립  
2005년 8월 10일 열린 19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Franoise Hampson 위원에게 재정적 합의 없이 민간인이 국제 인도주의 법과 국제 인권법 하에서 공격 받지 않을 권리를 상실한 상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IBiroahim Salama 위원에게는 국제 인도주의 법과 국제 인권법의 위반에 대한 전쟁 중 불법 행위에 불처벌, 형사 불처벌, 책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여 법의 집행에 관한 실무 그룹 차기 회기에서 제출하도록 표결 없이 결정.

2005/109. 이행기 정의 : 라틴 아메리카에 중점을 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조사 메커니즘  
2005년 8월 10일 열린 19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Janio Ivn Tunon Veilles 위원에게 재정적 합의 없이 전환기적 정의와 라틴 아메리카에 중점을 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조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고, 58회 소위원회 회기에 법의 집행에 관한 실무 그룹에 제출할 것을 표결 없이 결정.

2005/110. 소형 무기로 자행된 인권 침해의 방지

2005년 8월 11일에 열린 20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에게 58회 회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소형 무기로 자행된 인권 침해의 방지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표결 없이 결정함.

2005/111. 인권과 인간 계승

2005년 8월 11일에 열린 20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표결 없이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함.

(a) 특별보고관에게 Antoanella-Iulia Motoc 58회 회기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i) 특별보고관이 여러 국가들과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최종 보고서 준비에 도움을 줄 설문지의 전달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2005/112. 인권과 비국가행위자

2005년 8월 11에 열린 20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표결 없이 다음의 사항을 결정함.

- (a) 국제 인권 법 하에서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Mr. Biro, Ms. Motoc, David Rivkin, Ibrahim Salama에게 인권과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확충하여 58회 회기에서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2005/113. 2006년도 소위원회 실무그룹 구성

2005년 8월 11에 열린 20번째 회의에서 인권소위원회는 표결 없이 아래와 같은 2006년도 소위원회 실무 그룹의 구성을 승인함. 62회 회기에 과반의 위원에 대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그룹과 협의하여 재선되지 않는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

2005/114. 유엔 인권 기구 개혁에 있어서 독립전문가 집단의 역할

인권소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유엔 인권 기구 개혁에 있어서 독립 전문가 집단의 역할에 관한 문서를 다음에게 전달하도록 요청.

- (a) 인권위원회 위원장
- (b)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특히 제네바와 본부의 유엔 가입 국가들의 대표부를 포함, 널리 배포하도록 요청.